

서울특별시 마포구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7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3. 4. 27.) 및 「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」(시행 2023. 12. 29.)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명칭 변경
- 나. 조례 목적 변경(안 제1조)
- 다. 자율방범대 등 단체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라. 구청장의 책무 신설(안 제3조)
- 마. 자율방범대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삭제(기존 제4조, 제6조, 제8조)
- 바. 경비 지원 범위, 절차, 지원 중단, 지도·감독 사항 신설(안 제6조 ~ 9조)
- 사.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- 아.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(기존 제 14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4. 18. ~ 5. 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(2024. 5. 1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연합대”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,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.

3. “자율방범대원”이란(이하 “방범대원”이라 한다)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명칭) 방범대의 명칭은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○○○자율방범대”로 하고, 연합대의 명칭은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연합대”로 한다.

제5조(임무)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
 2. 청소년 선도 및 아동·노약자·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
 3.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
 4.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 5.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-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범대 방범일지에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6조(경비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

있다.

1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

2. 방법활동 중인 방법대원의 야식비

3. 그 밖에 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, 방법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9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절차 등) ① 제6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경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연합대에서 방법대의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법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를 분기별 방법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기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 중단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원에게 자율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방법대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0000년 00월 마포구 자율방범대 근무일지

방범대장	지구대장 (파출소장)

□ 동명:(00동, 연합대) 마포구 자율방범대 방범일지

순찰일		순찰시간	순찰대원		순찰내용 (순찰동선, 범죄예방 활동내용 등)	특이사항
월	일		성명	서명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목적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최영국
연 락 처	02-3153-8313